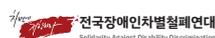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안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안내서

이 안내서에서는 ‘Individual communication’을 개인진정으로 번역하여 표기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공식 국문 번역본은 ‘개인통보’로 번역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식적으로는 ‘개인통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개인진정’으로 번역하여 널리 사용해 왔고 이 안내서의 주 이용자는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안내서에서는 용어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Individual communication’을 장애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인 ‘개인진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머리말	5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란?	6
2 개인진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10
3 개인진정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나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12
4 개인진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8
5 개인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6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개인진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24
7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8
8 직권조사란 무엇이고,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30
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34
부록 1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서식	36
부록 2 유엔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지침	40
부록 3 참고 자료	44
부록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46
부록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전문	50

머리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유엔에 **개인진정¹⁾**을 제기하거나 **직권조사²⁾**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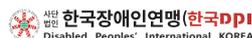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교육, 건강, 근로 등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서 국가가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12월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그동안 비준을 유보했다가 2022년 12월 비준했고, 2023년 1월 14일 발효되어 한국에서도 드디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바탕으로 협약 비준 14년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 제도와 직권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장애인 인권 문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국가의 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내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인진정’을 제기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의정서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를 이 안내서에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선택의정서에 따라 누가 개인진정을 유엔에 제기할 수 있는지, 진정서에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고, 개인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개인진정이 유엔에 접수되면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심의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관리되는지와 함께 선택의정서에 따라 유엔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진정 등을 접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와 도움받을 수 있는 단체와 기관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이 국내에서 완전히 이행되고 실현되도록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안내서가 사람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잘 이해함으로써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 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 12. 29.



1) 이 안내서에서는 ‘Individual communication’을 개인진정으로 번역하여 표기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공식 국문 번역본은 ‘개인통보’로 번역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식적으로는 ‘개인통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개인진정’으로 번역하여 널리 사용해 왔고 이 안내서의 주 이용자는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안내서에서는 용어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Individual communication’을 장애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인 ‘개인진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에 따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 인권조약³⁾입니다. 2006년 12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 25개 문단과 본문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건강, 근로 등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이하, 당사국)에서 장애인의 이러한 인권을 증진·보호·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187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2008년 12월 비준하여 2009년 1월 국내에 발효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구성

구분	내용		
전문	- 협약 제정 배경, 원칙, 목적, 원칙 등을 선언적 형식의 문구로 정리 - 총 25개 문단으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 있음		
본문	1조~8조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평등과 비차별, 장애여성, 장애아동, 인식제고	협약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
	9조~32조	접근권, 생명권, 법 앞의 평등, 개인의 자유와 안전, 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 자립생활, 교육, 건강, 근로, 사회적 보호, 참정권,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33조~40조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 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등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내외 모니터링
	41조~50조	비준, 발효, 유보, 개정 등	협약의 절차적 규정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제도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절차, 효과 등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7)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3) 조약, 협약, 규약 등을 이르는 총칭으로 사용할 때는 ‘조약’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칭할 때는 ‘협약’으로 표기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부속서이며 모두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안내서의 핵심 내용인 ‘개인진정’ 제도와 ‘직권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국내의 법률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이 ‘개인진정’과 ‘직권조사’를 활용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분야에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협약 이행을 강화하고 한국의 장애정책 전반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간 많은 사람이 한국이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애쓰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104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고, 한국은 2022년 12월에 비준하여 2023년 1월 14일 조약 제2537호로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만 유엔에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외에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하여 유엔에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외에도 개인진정의 내용이 규정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1990. 7. 10. 발효)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2007. 1. 18. 발효)를 비준했고,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97년 개인진정에 관한 14조를, 고문방지협약은 2007년 개인진정에 관한 22조를 수락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약에 근거하여 그 규정에 따라 유엔에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서로 다른 조약기구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여 여러 번 심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어떤 **인권조약기구⁵⁾**에 개인진정을 제기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 ‘3. 동일 사안으로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했거나, 다른 국제기구의 구제 절차로 심사받았거나 심사 중인 경우’ 참조)

그 외에도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특별절차에 관한 설명은 14쪽 참조)이나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또는 교육과학문화기구(UNED) 등에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약 관련 국내 비준 현황

협약명	가입서/비준서기탁일	발효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1990.4.10	1990.7.10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4.10	1990.7.10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미가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990.4.10	1990.7.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12.5	1979.1.4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12.27	1985.1.26
- 선택의정서	2006.10.18	2007.1.18
고문방지협약	1995.1.9	1995.2.8
- 선택의정서	미가입	
아동권리협약	1991.11.20	1991.12.20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9.24	2004.10.24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2004.9.24	2004.10.24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2008.12.11	2009.1.10
- 선택의정서	2022.12.15	2023.1.14
강제실종자협약	2023.1.1	2023.2.3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 > 인권 > 국제규범)

- 4) 선택의정서란, 기본이 되는 상위 조약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거나 상위 조약이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기본이 되는 상위 조약을 비준한 국가만 해당 조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고, 상위 조약을 비준했다라도 조약의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인권조약기구란, 당사국의 유엔 인권조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유엔에는 위의 표와 같이 9개 핵심 인권조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9개 인권 조약이 잘 이행되도록 조약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각 인권조약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인권조약기구라고 부릅니다.

2 개인진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당사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관련 당사국을 상대로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조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장애를 훨씬 폭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⁶⁾

피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에게 개인진정을 대리한다는 서면동의서를 받아 진정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진정을 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대리하여 부모가 개인진정을 제기하거나, 정식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을 대리하여 보호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또 후견인이나 수용 시설 등에서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막는 경우처럼 진정을 대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예외적으로 동의서 없이 진정을 대리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와 진정 대리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작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의 개인진정 절차를 잘 아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진정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피해자가 반드시 관련 당사국의 국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 신청자나 난민도 현재 자신이 있는 국가가 협약 당사국이라면 개인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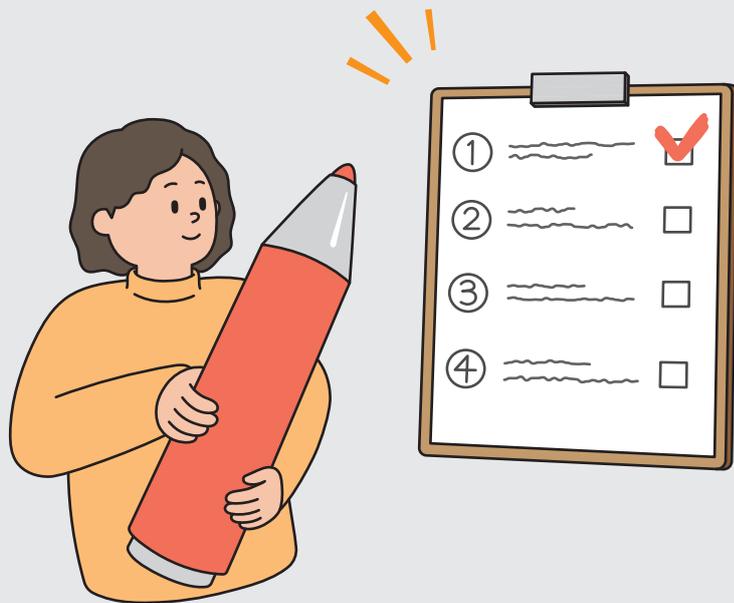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 세계 장애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을 합니다.

주요,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종 견해 형태로 권고하는 일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제기된 개인진정 사건을 접수·심의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협약 위반으로 판단되면 당사국에 구제 방안을 권고하는 일을 합니다. 또 협약 각 조항의 일반 논평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당사국 회의에서 당사국이 투표하여 선출하는데, 당사국의 장애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리적 분포, 법률 경험과 성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출합니다.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재임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관련자를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권리구제를 권고한 개인진정 결정례도 있습니다.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벨리니 대 이탈리아 사건(Bellini v. Italy, 2022. 8. 26. 결정, CRPD/C/27/D/51/2018)에서 사회적 보호의 권리를 규정하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제28조 제2항(c)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당사국의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원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애인 관련자의 권리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필수 선행 조건으로,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면 장애인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개인진정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나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에는 개인진정을 심리할 수 없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사건이 심리 전에 갖추어야 할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리 절차를 종료합니다. 이를 보통 ‘심리적격 심사’라고 부르는데, 다음 6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제기된 개인진정 사건이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종료합니다.

1. 개인진정을 익명으로 한 경우

개인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이하, 진정인)⁷⁾과 피해자는 익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 없이 익명으로 개인진정이 제기되면 당사국에서 개인진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리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결정에서는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진정 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이와 관련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결정은 공개됩니다. 그러므로 최종결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진정인과 피해자는 최대한 빨리 이러한 의사를 유엔에 밝혀야 합니다.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진정 제출 서식에는 이 최종결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익명으로 해달라고 표기하면 공개되는 결정문에는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이름을 이니셜로만 표기합니다.

2. 개인진정 절차 남용에 해당하거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드물지만, 단순한 장난이거나 또는 이미 기각된 개인진정 사건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진정을 부적절하게 이용한다고 판단되면 심리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또 개인진정의 내용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거나 당사국이 비준을 유보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리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처음 비준할 당시에는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협약 제25조e항의 비준을 유보했으나, 2021년 12월 유보를 철회하고 이 조항도 비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비준을 유보한 조항이 없습니다.

⁷⁾ 유엔 문서에는 Complainant 또는 Authors of communicatio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안내서에서는 모두 진정인으로 번역, 표기했습니다.

3. 동일 사안으로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했거나, 다른 국제기구의 구제 절차로 심사받았거나 심사 중인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다른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해 개인진정을 제기하고 심사를 받았거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이미 개인진정을 제기해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다시 개인진정을 접수하면 심리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및 인민권리재판소와 같은 지역 인권기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거나 심사 중인 경우에도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개인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인권조약에 근거해 개인진정을 제기할지, 어떤 국제기구의 구제 절차를 활용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는 물론이고 유엔 내 다른 조약기구의 결정문까지 살펴보고, 다른 국제기구의 결정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기한 개인진정의 내용과 새로 제기하는 개인진정의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받으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인만 달리하는 것으로는 다른 사건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의 핵심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국제기구에서 동일 사안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절차적인 이유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나 워킹그룹에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서한을 보낸 경우, 그것과 동일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심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인권이사회와인권조약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두 기구가 그 작동 원리나 구조가 다르다고 보고 동일 사안이라도 조약기구의 개인진정 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을 보고하고 자문할 권한이 있는 독립인권전문가 제도로서, 유엔을 대표하는 핵심 인권 보장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3년 현재 인권이사회는 광범위한 인권 주제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특별절차를 50개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절차의 진정제도는 해당 국가가 관련 협약의 개인진정 제도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보고관 등이 진정을 받아 협약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사실만 확인되면 국내 구제절차를 마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권조약의 개인진정 제도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결정(decision)이 아니라 의견(opinion)으로 채택되어 해당 국가에 통보되고, 특별절차 수임자는 진정인 등에게 후속조치를 알릴 의무가 없어 진정인은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진정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4.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진정인은 당사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했으나 효과적으로 구제 받지 못한 경우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구제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더 남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 구제절차에는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가 모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재판)와 헌법재판소의 구제절차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에서 결정받은 것만으로는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이 규정의 예외로 보아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조력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국내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당사국의 법률이 이러한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내 구제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연되어야 불합리한 지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법원이 해당 사건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러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와 근거를 자세하게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구제절차가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여기거나 불합리하게 지연된다는 의심만으로는 이 요건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구제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할 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국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첫 단계부터 유엔에 개인진정을 제기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국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구제절차를 진행할 때는 특정 청구를 누락하고 일부 내용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유엔에 개인진정을 제기할 때 국내 구제절차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해당 내용이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심리부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첫 단계(1심)부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진정한 내용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종료합니다. 따라서 개인진정을 접수할 때는 당사국이 협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와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적을 때는 전체 내용을 뭉뚱그려 적지 말고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조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진정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진정인과 당사국에서 제출하는 서면에 기초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이 서면에 협약 위반 사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발효 전에 발생한 경우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발효 전에 발생했다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이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종료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2023년 1월 14일 국내에서 발효되었으므로 이날 이후로 발생한 사안일 때만 개인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그 피해가 국내 발효 시점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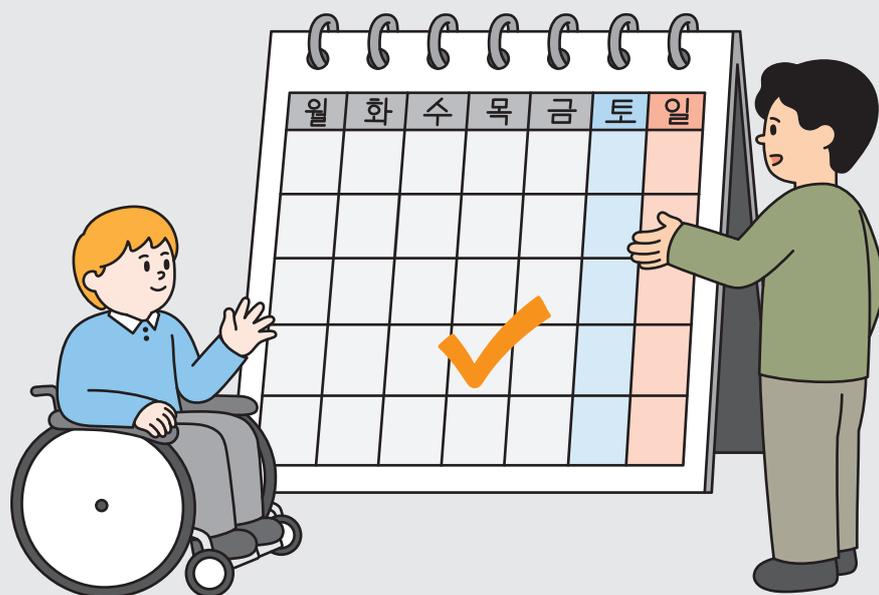
심리부적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위에 열거한 이유에 해당해 심리부적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제기하는 진정의 사안이 해당 요건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나 심리할 사건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당사국은 위에 열거한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진정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진정서에 그 요건과 관련해 미리 반론을 제시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으나 당사국이 위에 열거한 요건에 해당해 심리부적격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진정인은 추후라도 그에 반론을 제기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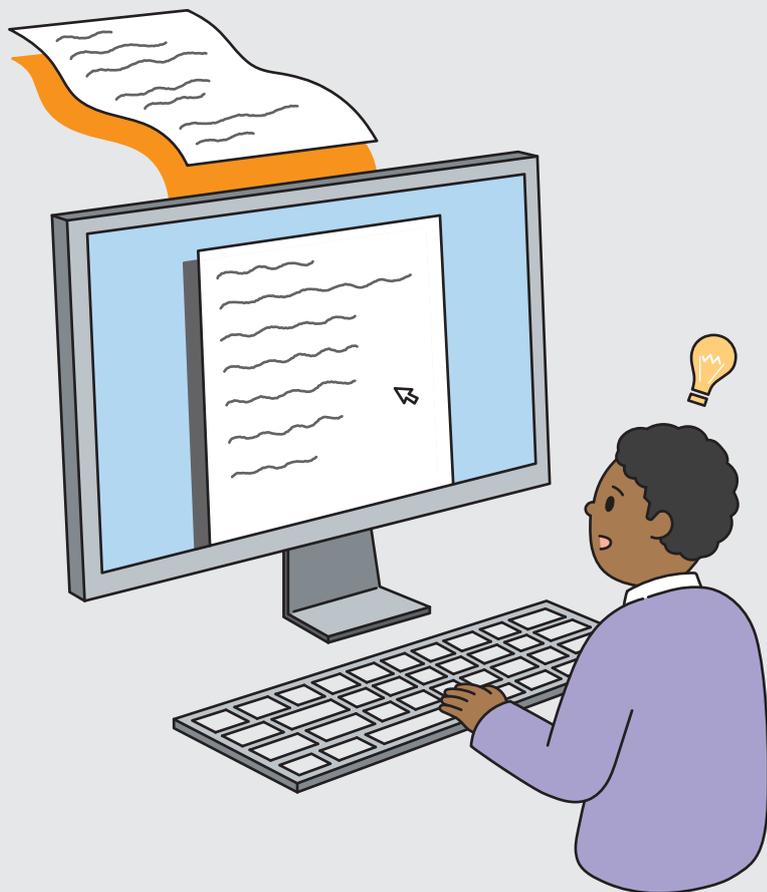
4 개인진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인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인권조약기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1년 이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는 5년 이내에 개인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특별히 그 기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되도록 빨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늦게 제기할수록 당사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해당 진정 사건을 심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곧바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변호사가 없어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인진정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 개인 진정을 제기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의 개인진정 절차를 잘 아는 개인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엔에서는 개인 진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개인진정서를 특정 형식에 맞추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진정에 필요한 세부 정보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유엔에서 개인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진정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서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진정서 서식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한국어 번역본은 부록 1에 있습니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의 왼쪽 메뉴 중 'Individual communications' 참조.

개인진정은 유엔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읽기 쉽게, 되도록 컴퓨터를 사용하여 읽기 쉽게 작성하고,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전자서명도 가능하며, 손으로 직접 서명한다면 이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지정된 전자우편 주소(petitions@ohchr.org)로 보내면 됩니다. 보낼 때는 word 파일(전자 형태 파일, 서명이 없어도 됨)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한 종이로 된 문서는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자 문서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단면으로 20쪽 이내)으로 출력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주소

Petitions and Urgent Actions Section

OHCHR, Palais des Nations, Avenue de la Paix 8-14, 1211 Geneva, Switzerland

다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라면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한 대체의 사소통 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서에는 어떠한 정보를 담아야 하나요?

우선 어떤 인권조약에 따라 어떤 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접수하는지와 어떤 국가를 상대로 개인진정을 제출하는지 관련 당사국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성과 이름, 생년월일과 출생지, 국적, 성별, 현재의 주소와 연락처 등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서가 없다면 동의서 없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합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진정인 이외에 대리인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장애 특성도 밝혀 두면 좋습니다. 진정 내용을 작성할 때 주요 사실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되, 진정과 관계된 정보는 모두 적어야 합니다.

또, 국내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도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시도했던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시간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내에서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이용했던 기관, 해당 기관에 문서를 제출한 날짜와 문서 내용, 결정을 받은 날짜와 결정 내용,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았다면, 국내 구제절차를 마칠 수 없었던 이유나 마치지 않았는데도 개인진정을 제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긴급하거나 민감한 특수상황이라면?

유엔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진정 사건을 일반 절차에 따라 심사하기 전에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interim measures)’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형선고 집행 또는 고문 위협에 직면한 사람을 송환하는 행위처럼, 일단 시행되고 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유엔은 관련 당사국에 이를 방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당사국에 임시조치를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해당 개인진정 사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거나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할 때 임시조치를 요청하지만, 본안 결정 이전이면 어느 단계에서든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요청할 때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임시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근무일 기준으로 며칠(보통 48시간 정도)이 걸리고, 결정 이후에 각 당사국의 제네바 대표부에서 당사국의 외교부와 해당 부처 등으로 전달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진정인의 주장을 적을 때는 진정 대상 사실이 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당사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떠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어느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표기하고, 만약 조항을 두 개 이상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각각을 따로 적습니다.

제기하는 진정사건이 유엔의 다른 인권조약기구나 다른 국제기구의 구제절차에서 검토된 적이 있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최종결정에서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진정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민감하고 특수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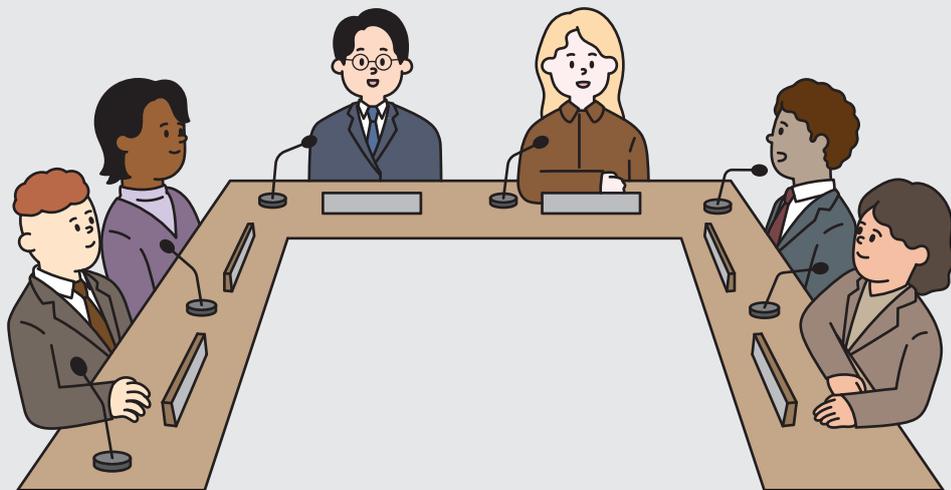
진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된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국내 구제절차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국내 구제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당사국의 관계 법령 사본(영문본)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 관련 법령의 영문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를 참고하세요.
홈페이지의 '법령' 항목 중 '외국어번역' 페이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관련 법률의 영문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련번호를 붙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엔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이 언어 중 하나로 전문을 번역하여 보내거나 요약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으므로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보내야 합니다.

6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개인진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정인이 지정된 전자우편 주소(petitions@ohchr.org)로 개인진정서를 제출하면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의 '청원 및 긴급조치 부서(Petitions and Urgent Actions Section, 이하 청원부서)'에서 진정서를 받아 해당 인권조약기구에 개인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⁸⁾

사전 심사: 개인진정 사건 등록 단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실무그룹**⁹⁾에 전달돼 앞서 언급한 요건을 기초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사전 검토에서는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여 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기로 결정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의 특별보고관은 당사국에도 개인진정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심리적격 심사 및 본안 심사 단계

정식 사건으로 등록된 개인진정 사건은 심리적격 심사 단계와 본안 심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심리적격 심사 단계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심사에 필요한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본안 심사 단계는 진정인이 주장한 실질적인 내용, 즉 진정인의 주장처럼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는 나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심리적격 심사와 본안 심사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이러한 접수 및 심사 단계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때에 따라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개인진정 사건에 관한 답변서를 받는 과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국이 제기된 개인진정에 반박하는 **1차 답변서**¹⁰⁾를 제출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진정인에게 다시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사국과 진정인이 서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을 언제 중단할지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과 당사국이 서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진정 사건인 경우에는 진정인과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만 토대로 심사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답변서를 잘 챙겨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국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진정인이 답변서를 다시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8) 만약 이 단계에서 진정인이 진정서에 제시한 사실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개인진정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없으면, 청원부서에서 진정인에게 세부 정보를 추가하여 제출하거나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일부 1년 내에 진정인이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폐기됩니다(유엔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안내에는 2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을 폐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엔 인권조약기구 홈페이지에는 1년 이내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9)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을 번역한 것입니다.

10) 당사국은 보통 1차 진술서에 진정인이 제기한 개인진정 사건이 심리적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관한 당사국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 당사국에서 해당 사건이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심리부적격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명시하여 진술서 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국이 유엔 사무국에서 수차례 재촉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결정합니다.

진정인과 당사국 간의 소통은 청원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진정인과 당사국이 개인진정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모두 제출했다고 청원부서에서 판단하면, 이를 정리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 담당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보고관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위원들이 다 함께 심의, 의결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본회의는 보통 1년에 두 차례, 3월과 8월에 열리는데, 개인진정 사건은 이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합니다.¹¹⁾

결과 송부

위원회가 개인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면 그 최종결정 내용을 위원회의 견해로 하여 진정인과 당사국에 동시에 송부합니다. 위원회의 견해는 보통 판단과 권고 내용 두 부분으로 작성됩니다. 판단에서는 관련 당사국이 협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권고 내용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구제책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합니다.¹²⁾ 위원회 위원 중 다수와 의견이 다른 위원이 있거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이유가 달랐다면 소수 의견을 밝히는 의견서를 별도로 첨부하기도 합니다.

개인진정 사건의 결정 내용은 유엔 최고대표사무소의 'JURIS Database' 웹사이트(<https://juris.ohchr.org/>)에 공개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 사건 외에도 다른 8개 조약기구의 개인진정 사건 정보도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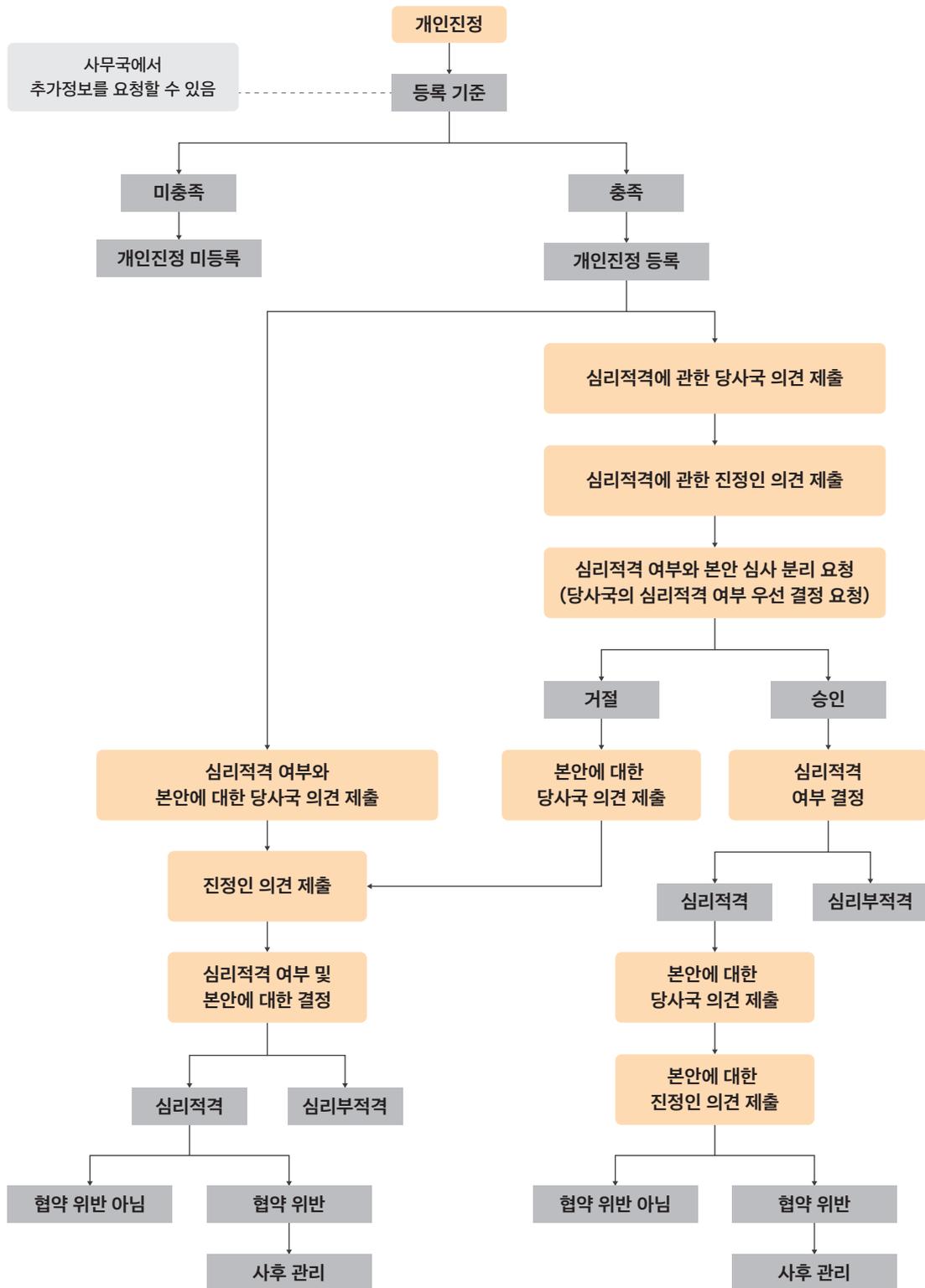
개인진정 접수 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건을 설명해도 되나요?

개인진정 사건 심의에는 기본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과 국적이 같은 위원은 해당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중립성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원도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진정을 접수했다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지 마세요. 당사국 정기 보고서 심의 때는 이러한 로비활동을 해도 무방하나, 개인진정 사건 때는 이러한 로비활동을 하면 제척 사유가 되어 해당 위원이 배제되거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보통은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담기도 합니다.

12) 보통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권고 내용에 개인 피해구제 외에 법령 입법이나 개정 등 정책개선 사항도 포함합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보상이나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권조약기구 결정 이후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서 그 결정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엔 결정 이후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노동법상 제3차 개입금지 관련 개인진정 사건을 결정하면서 권고 내용에 손해배상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면서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한 바 있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 결정 이후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판결)도 있으나 그 후 유엔자유권규약 위반 결정이 내려진 다른 유사 사건(외국인 회화강사에 대한 HIV 검사)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불인정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진정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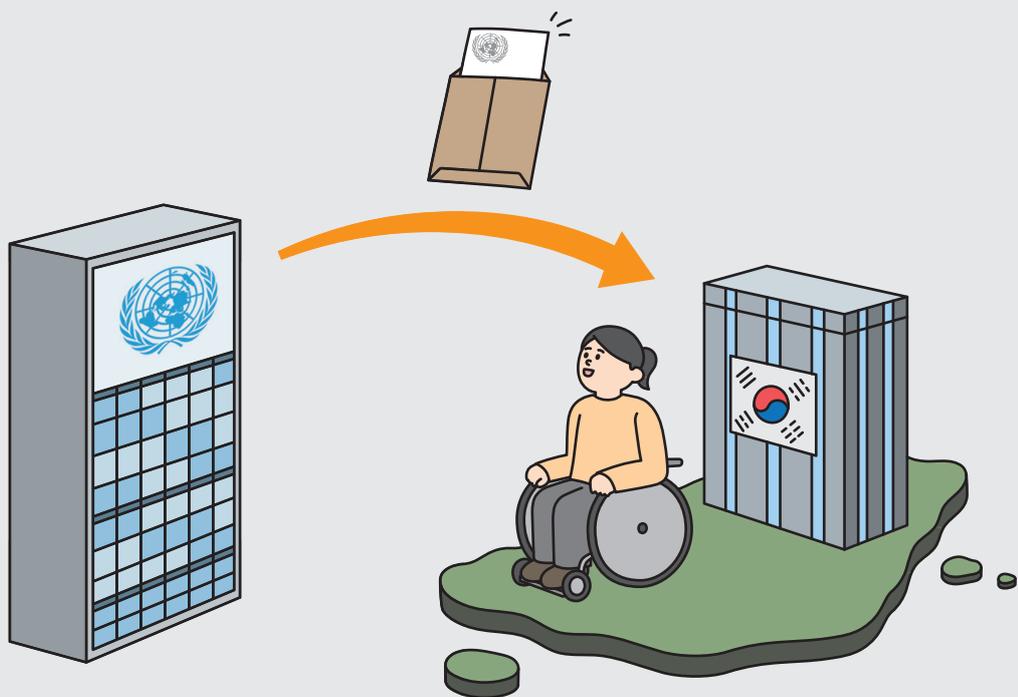


출처 유엔 조약기구의 개인진정 절차 흐름도(FactSheet7Rev.2, 유엔, 2013)

<https://www.ohchr.org/en/publications/fact-sheets/fact-sheet-no-07-rev-2-individual-complaints-procedures-under-united>

알림! 어느 단계에서든 진정을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같이 개인진정 제기 사유가 사라지는 등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개인진정 사건의 심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해당 개인진정 사건이 심리에 부적격하다고 결정하거나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이 같은 결정 사실을 진정인과 당사국에 송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결정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의 견해(views of committee)로 진정인과 당사국에 전달하면서, 후속 조치로서 당사국에 6개월 이내에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서면 답변서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개인진정 실무그룹이나 특별보고관을 지정하여 당사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정된 실무그룹이나 특별보고관은 당사국에 연락하여 후속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관련 당사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진정과 관련해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그것이 곧 최종결정입니다.

8 직권조사란 무엇이고,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권조사(Inquiry)란?

개인진정 외에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을 1명 이상 지명하여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직권조사’라고 부릅니다.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진상을 규명하고자 위원들이 직접 조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진정은 제출받은 서면을 중심으로 심사하는데, 직권조사는 관련 당사국에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 외에도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받아 직접 당사국에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청문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진정과 달리 국내 구제절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국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6조에는 직권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진정과 동일하게 직권조사 역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 발효한 당사국에만 적용¹³⁾되며,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직권조사 절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서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면, 우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추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합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판단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정해진 기한에 관련 정보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또 조사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한에 보고서를 작성할 위원을 1명 이상 지명합니다. 지명된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운영규칙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당사국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때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사전에 세부 계획을 세워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위원 2~3명이 2주 정도 방문하여 당사국의 대표, 관련 정부 기관,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전문가나 사건에 관련된 개인을 만나거나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합니다. 또 꼭 만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명한 위원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논평 및 권고와 함께 결과를 당사국에 송부합니다. 당사국은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180일) 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권고 이행 상황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라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와 함께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¹³⁾ 당사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더라도 선택의정서 제8조에 따라 직권조사와 관련된 조항인 선택의정서 제6조 및 제7조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때 제6조와 제7조의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종료 후 조사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당사국 등에서 제출 받은 문서와 함께 공개됩니다. 관련 자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웹사이트의 직권조사 절차(Inquiry procedure) 페이지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웹사이트의 직권조사 절차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inquiry-procedure>

▶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 자료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4&DocTypeCategoryID=7

직권조사는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직권조사는 자주 이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유엔에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후 15년이 흘렀는데, 현재까지 영국, 스페인, 헝가리 등 3건을 조사 완료했고, 현재 네 번째 사건을 조사¹⁴⁾ 중일 정도로 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직권조사에는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직권조사를 요청할 때 관련 당사국이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정보로 만들어 입증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 주소(ohchr-crpd@un.org)로 요청하도록 안내할 뿐, 직권조사를 요청할 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국제 활동을 하는 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국제장애연합)의 홈페이지에서 직권조사 요청과 관련해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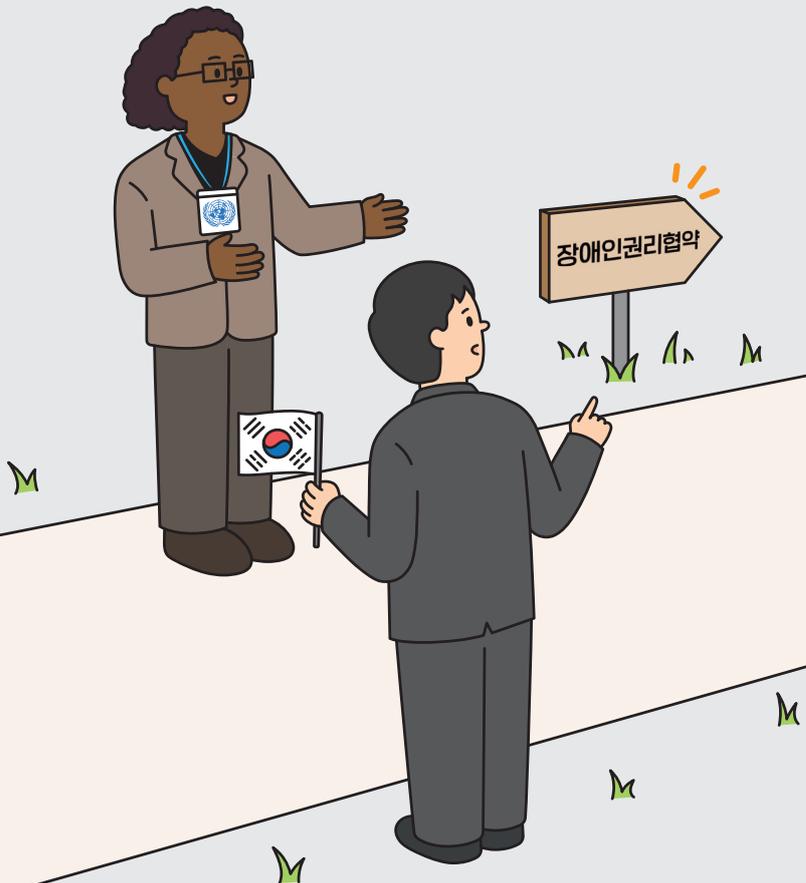
- 직권조사 요청의 내용 및 관련 제출 정보와 자료는 유엔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면에는 관련 당사국의 이름을 명시하고,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서류에 이 사실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직권조사를 요청할 때는 제출하는 단체를 설명하는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장애인단체라면 사명, 비전, 선언문, 조직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설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¹⁵⁾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협약 위반 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하되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 얼마나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 정도를 최대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¹⁴⁾ 조사 중에는 비공개이므로 직권조사 중인 국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¹⁵⁾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에 관한 지침(CRPD/C/11/2)에 따른 내용

-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항 등 직권조사 요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나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진정 자료를 제출하는 것처럼 날짜별로 정리하여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자료를 간단히 설명하면 좋습니다. 단, 대중 매체에서 보도한 자료에만 의존해 정보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 직권조사 요청 내용과 관련 정보 등은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word 파일(전자 형태 파일)로 제출하면 유엔의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면 유엔에서는 관련 정보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그 밖에도 장애인단체 또는 기타 시민단체가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정보원, 즉 대학, 인권기구, 기타 지역 단체 등의 추가 정보원을 추천하고, 당사국에 방문할 경우 조사 절차에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국의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관련 당사국에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의 결과와 함께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을 송부하더라도 당사국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 발효했다는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고 협약 위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한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사국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후속절차를 두고, 이로써 당사국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록 1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서식 (한국어 번역본)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서식

서식의 모든 항목에 답변을 적어 주십시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된 내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식에 따라 작성된 진정서를 기반으로 인권조약기구에서 귀하가 제기한 진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추가 사실 정보를 첨부파일(첨부파일은 1만 단어로 제한)로 제출하십시오. 이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위원회의 이름

항목을 선택하세요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 ▶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CCPR), 자유권 규약 관련
-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 ▶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 ▶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 강제실종위원회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CED)

2. 당사국 또는 관련 당사국

3. 진정인

이름 _____

성 _____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4. 진정인의 연락처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5. 피해자 (진정인과 다른 경우)

이름 _____

성 _____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6.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 (다른 사람이 진정인을 대리하는 경우)

이름 _____

성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7. 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요

8. 다른 지역적 또는 국제적 조사나 구제절차를 이용해 동일 사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 ‘예’로 답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절차의 이름, 제출 날짜, 제출자, 제기한 주장, 채택된 결정을 명시해 주십시오.

9. 임시조치(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예방을 위해) 또는 보호조치(진정인 또는 피해자, 그 가족이나 대리인에 대한 피해 또는 보복 방지를 위해)를 요청하십니까?

예 아니요

▶ ‘예’로 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명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적으세요.

10. 사실관계 [2,500 단어로 제한]

사건의 주요 사실을 시간순으로 요약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날짜, 사법적·행정적 구제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적어 주십시오. 일반적인 상황 정보는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협약 위반에 관한 주장은 포함하지 마세요(아래 11번에 포함되어야 함). 국내 구제절차의 정보를 적어 주세요.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취한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원이나 행정당국에 요청한 단계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각각 제출한 날짜와 내용, 제출자, 결정 내용과 결정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11. 주장 [600 단어로 제한]

귀하가 작성한 사실과 상황이 진정한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그것이 왜 권리 침해라고 생각 하는지를 적어 주십시오(가능한 한 관련 협약의 조항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12. 날짜, 장소 및 서명

날짜

장소

진정인과 피해자의 서명(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자가 서명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의 서명(만약 다른 사람이 진정을 대리하는 경우)

- ▶ 참고: 다음 두 개 파일을 보내십시오. • word 문서 파일(서명이 필요하지 않음)
• 서명한 문서 파일(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송부)

13. 서류 목록

모든 문서가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연속번호를 부여했는지, 라벨을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 부록 1(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 2020년 6월 4일), 부록 2(지방법원 판결문 - 2020년 7월 8일)]

- 귀하의 청구에 대한 국내 법원(및 행정 당국)의 결정. 만약 위에서 제시한 업무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각 결정의 요약본
- 기타 다른 국제적인 조사나 구제절차를 이용한 경우 그 청구서와 결정문
- 귀하의 진정 내용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 또는 기타 입증 증거. 관련이 있다면 의학적 또는 심리적 보고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국내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관계 법령

14. 개인진정 제출 방법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개인진정서와 첨부 문서를 이메일(petitions@ohchr.org)로 보내 주십시오.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종이 문서(단면으로 20쪽 이내)를 다음 우편 주소로 보내십시오.

우편 주소

Petitions and Urgent Actions Section

OHCHR, Palais des Nations, Avenue de la Paix 8-14, 1211 Geneva, Switzerland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종이 문서로 된 진정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마시고 사본으로 제출하십시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록 2 유엔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지침 (한국어 번역본)



유엔 조약기구에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방법

1. 개인진정을 접수하는 위원회

개인진정을 제출할 조약기구 단 한 곳(이하, 위원회)을 선택하십시오. 개인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조약기구는 인권위원회(CCPR), 고문방지위원회(CAT), 사회권위원회(CESCR), 아동권리위원회(CRC),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강제실종위원회(CED)입니다.

2. 당사국

국가가 관련 인권조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개인진정 절차가 규정된 관련 인권조약의 조항에 따라 선언함으로써 위원회의 개인진정 접수 권한을 인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가가 각 위원회의 개인진정 접수 권한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A&lang=en에서 확인하십시오.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당사국이 위원회의 개인진정 접수 권한을 인정한 날짜 이후(국가가 관련 선택의정서를 비준했거나 선언한 이후)에 발생했는지, 또는 그러한 침해가 해당 날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7. 진정인과 피해자

진정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진정인과 피해자가 동일합니다. 대부분 위원회에서는 최종결정문에서 진정인을 ‘작성자(author)’로 지칭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예: 사망, 실종, 구금)로 진정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와의 정당한 이해(legitimate interest)를 증명할 수 있는 진정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8-9. 대리인

법률적(변호사)으로 또는 비(非)법률적(예: 인권단체 등)으로 진정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진정을 반드시 변호사가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 자문을 받으면 제출물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유엔이 개인진정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0. 진정인/피해자 이름의 익명처리

개인진정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권리 침해 혐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된 개인진정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나 작성자가 위원회의 최종결정문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결정문은 공개되므로 진정인이 최종결정문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결정문의 일반적인 공개 수준(이는 인터넷 전파를 포함하므로 정보 정정이나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최종결정문이 발표된 후 제출한 익명처리 요청에 유엔이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다른 국제 인권 메커니즘 이용

동일한 진정을 다른 조약기구나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등 지역 인권 메커니즘에 제출한 경우, 대다수 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사회는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진정이 더는 다른 국제적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accession) 시점에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개인진정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임시 조치와 보호 조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임시 또는 보호 조치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위원회의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도록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란 그 성격상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의미합니다.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작성자는 위험이 실재하며, 위험이 현실화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해당 위험이 특정 개인에게 가해지는 위험(통상적 환경 위험이 아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시 조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형 집행 유예, 작성자가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는 것을 유예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위원회의 최종결정, 다른 말로 ‘견해(Views)’가 채택되기 전에 언제든지 위원회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진정인이 예방하려는 행위가 현실화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진정인은 또한 개인진정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사, 증인, 가족 등 해당 개인진정에 연루된 개인을 보복에서 보호하는 보호 조치 채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위험은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 요청은 ‘견해’의 후속 절차(위반했다는 결정이 채택된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국내 구제절차 소진 등의 사실관계

진정인은 국내 수준에서 시도한 구제절차와 국내 관계 당국에서 채택한 결정 등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진정인은 위원회에 심리를 청구하기 전에 당사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구제절차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사법 제도를 이용해 최종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그러한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지체되거나, 여타의 사유로 효과적이지 않거나, 진정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진정인은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구제절차의 효과가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청구 이유(claim)를 이 부분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청구이유는 아래의 제14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진정은 국내 구제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진정을 지연하여 제출하면 당사국이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개인진정을 제출하면 청원권 남용으로 간주하여 심리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구제절차가 소진된 시점부터 개인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위원회에 따라 다릅니다.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6개월
-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 1년
- 인권이사회 : 5년

다른 위원회는 개인진정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14. 청구이유

진정인은 기술한 사실관계가 관련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관련 조약의 특정 조항을 인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정인은 침해된 조약상 권리가 무엇이며, 당사국이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기술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밝혀야 합니다. 또 위원회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반했다고 결정한다면 작성자가 당사국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개인진정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17. 개인진정 제출

개인진정은 서면으로 읽기 쉽도록 작성하고 되도록 타이핑하며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 수단으로 제출하는 진정서에는 전자서명을 하거나 수기로 서명한 후 스캔본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청원 및 긴급조치 부서(OHCHR Petitions and Urgent Actions Section, PUAS)의 이메일(petitions@ohchr.org)로 보내야 합니다. 또 서명하지 않은 워드 버전(word version)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수단으로 개인진정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종이로 된 개인진정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무국의 업무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된 개인진정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가 이들 언어 중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면 비공식 번역 요약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문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속서에는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 진단서 등 여타 관련 공식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청구이유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개인진정 절차 진행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부족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청원 및 긴급행동국(PUAS)은 진정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개인진정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PUAS와 교신하는 데 성실히 임해야 하며, 요청받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 일부터 2년 이내에 정보를 받지 못하면 해당 파일은 폐쇄됩니다.

부록 3 참고 자료



참고 웹사이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 웹사이트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individual-communications>
- 유엔 인권조약에 따른 개인진정 절차 안내서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2021-08/FactSheet7Rev.2.pdf>
-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서식 및 지침
<https://www.ohchr.org/en/documents/tools-and-resources/form-and-guidance-submitting-individual-communication-treaty-bodies>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 절차 소개 웹페이지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inquiry-procedure>
- 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의 직권조사 절차 소개 웹페이지
<https://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inquiry-procedure-crpd-cmmttee>
-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개인진정 결정례 데이터베이스
<https://juris.ohchr.org>
-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 자료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4&DocTypeCategoryID=7

참고 도서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7)
-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단체 공동 발행, 2013)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쉬운 설명자료(EASY READ)인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Inspired Service, 2007)’을 한국에 맞게 번안한 책
-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가인권위원회, 2020)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1,2호)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3,4호)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6호)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이행 방안을 위한 호주 사례 소개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연맹, 2003)
 - ▶ 호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 사례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진정 경험을 소개한 책

부록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연락처 정보)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개인진정 제기나 직권조사 요청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단체와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 및 인권침해 상담 단체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전자우편 ddask420@naver.com

홈페이지 www.15771330.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08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상담전화 1577-5364

전자우편 cowalk1004@daum.net

홈페이지 www.cowalk.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 신고 가능)

홈페이지 www.naapd.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1412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상담전화번호 1522-2882

홈페이지 www.broso.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활동 단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연대

(사무국) 한국장애포럼(KDF) 02-6954-7418

전자우편 kdf@thekdf.org

홈페이지 thekdf.org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08호

(가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연대

(사무국)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02-457-0427

전자우편 dpikorea@dpikorea.org

홈페이지 dpikorea.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405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사무국)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02-3472-3556

전자우편 rikorea2012@hanmail.net

홈페이지 www.freeget.net

관계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 국번 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전자우편 hoso@humanrights.go.kr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 수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거나 이메일에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화상 수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콜 110번(110번 홈페이지 접속 <https://www.110.go.kr/consult/cam.do>)의 수어상담 통역서비스나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국번 없이 107)를 이용하시면 근무시간 중에 사전 예약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국번 없이 1331)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담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044-202-3304(장애인권익지원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담당)

홈페이지 www.mohw.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화 02-3433-0647(국제협력팀)

전자우편 inco@koddi.or.kr

홈페이지 www.koddi.or.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부록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전문
(한국어 번역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협약상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2.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가. 통보가 익명인 경우

나.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을 구성하거나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다.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인 경우

라.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이 규정은 구제절차의 이용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나 효과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 통보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바.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다만, 그러한 사실이 발효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통보를 비공개로 당사국에 주지시킨다. 접수국은 그 사안과 그 국가가 취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된 규정 위반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그 통보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검토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검토한 후 제안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보여 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당사국에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 수행 및 위원회에 대한 긴급 보고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 관련 당사국에 그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협약에 서명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이 의정서 서명국의 비준 대상이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고 이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정식 확인 대상이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 지역의 주권 국가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협약과 이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협약과 이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알린다.
2. 이 의정서에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정식 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의정서는 이러한 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 표시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0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과 이후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도달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이후부터는, 그 개정안은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이 의정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18조 이 의정서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편집	반재윤
그림·디자인	이준엽
쉬운 정보 감수	김상욱 이주형 장지용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포럼
ISBN	979-11-7214-006-9 13360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69-01

- 이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권을 전부 소유한 저작물은 아니므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 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